

경운대학교 편입학학점인정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 제2항에 의거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(이하 “학점인정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정학점) (인정학점) 우리대학교에 편입학한 자는 다음과 같이 취득학점을 인정한다.

학 년 \ 졸업학점	120학점 (예체능 계열)	130학점	140학점 (간호대학)
제 2학년 1학기 편입	30	33	35
제 3학년 1학기 편입	60	65	70
제 4학년 1학기 편입	90	98	105

단, 입학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전적대학에서 65학점 및 98학점미만을 이수한 경우 이수학점만 인정한다.

제3조(학점인정 심사) ① 학점인정 심사는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을 편입학한 학부(과)의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인정과목을 결정한다.

② 학점인정 심사는 편입학한 학부(과)에서 최소 3인 이상의 교수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, 심사한다.

③ 국가공인면허증 및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의 경우 과목별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4조(이수교과목 및 학점) 편입생은 제2조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편입학한 학기의 당초 입학생과 동일기준에 의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졸업학점)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